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1996. 2. 10.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2월 6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6년 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36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
(96.2.1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문엽승

가.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 (안 제18조제1항)

○ 공무원 건강진단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호 및 제6호)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제5호)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경로 효친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5.12.14 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마포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편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소

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종전 20일에서 23일까지 확대 조정하였으며,

○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해당공무원은 물론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과 기일도 포함 되도록 하였고,

○ 안 제23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공가 대상범위를 확대함

○ 안 제24조제5항제5호를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도 6일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6항에서는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실시하도록 신설됨

○ 동 개정조례안은 95.12.14일자 대통령령제 14825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8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 규정된 현행 조례 제19조 규정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고, 안 제24조제5항은 조례내용상 포상휴가권자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24조제5항제5호의 규정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일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된 부분에서 주요업무의 구분 범위가 동 조례안 내용상 분명치 않은 점등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공무원의 연가 실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조례로 정하는지?

○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연가수당은 며칠 분 지급하는가?

○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바, 현재 15일분

만 지급하고 있음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실시하는 10일의 휴가는 연가 23일에 포함되는지?

○답변요지(문엽승 총무과장) :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실시하는 10일의 휴가는 특별휴가로 공무원 재직중 1회에 한하여 실시되며 연가일수 23일에 포함되지 않음

5. 토론요지 : 수정(안)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및 발의자 : 96.2.10. 김충환 위원

나.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불필요한 현행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휴가권자(구청장)를 명시함

다. 주요수정골자

1) 안 제18조제2항 규정의 신설로 개정조례안에 중복된 현행 조례 제19조 삭제

2) 안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휴가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제5항을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 2. 10.

제안자 : 총무재무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불필요한 현행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휴가권자(구청장)를 명시함

2. 주요수정골자

○안 제18조제2항 규정의 신설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중복된 현행조례 제19조를 삭제함

○안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휴가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제5항을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로 함(안 제24조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제2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이 중복되는 현행조례 제19조를 삭제한다.

안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휴가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제5항을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제18조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삭제)
제24조(특별휴가) ①~④(생략)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⑤포상휴가	제24조(특별휴가) ⑤구청장은포상휴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

제출년월일 : 1996. 2. 6.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안 제18조제1항)

○공무원 건강진단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호 및 제6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5항제5호)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3. 개정근거

○지방공무원법(1995.1.5. 법률제4871호)제59조

○지방자치법(1995.8.4. 법률제4959호)제15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직 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

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을 “(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어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중 “편중되지 아니하도록”을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현행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①(생략)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에는 중식 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개정안

③
.....
.....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

제2장 근무시간등

제13조(근무시간) ①(현행과 같음)
②
.....중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년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②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②~③(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22조(병가) ①~②(생략)
<신설>

제22조(병가) ①~②(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생략)

제23조(공가) (현행과 같음)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1.
.....참가할 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참가할 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신설>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

7.

제24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경조사휴가.....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출산휴가.....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성보건휴가.....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수업휴가.....

현 행	개 정 안
<p>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1.~4. (생략) <신 설> <신 설></p> <p>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⑤포상휴가 1.~4. (현행과 같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p>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퇴직준비휴가.....</p>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6. 2. 7.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1.1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6. 1. 16.
- 다. 상정일자 : 제36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96.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청소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6.20.규칙 제2700호)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과태료처분통지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를 포함시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토록 함.(안 제2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9조제2항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로 개정하는 것임.

○ 이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6.20. 규칙 제2700호)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 및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일반폐기물소각량에 대한 규제는 없는가?